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2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5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엔엘에스(김승한) ②한신공영㈜(선홍규)
③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최익훈)

나. 전화번호 : ①02-2687-2200 ②02-3393-3466 ③031-766-855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3호

3. 명칭 :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1차 반사경, 2차 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sqrt{2}$) 1차 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 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까지 햇빛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용한 픽셀형 2차 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빛의 분산 또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일조권 침해(건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이다.

<범위>

태양추적방식의 타원형($1:\sqrt{2}$) 1차 반사경과 픽셀형 2차 반사경이 일체화된 채광장치 및 채광기술

5. 보호기간 : 2015.07.14. ~ 2023.07.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